

● 환경부고시 제2021-264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64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①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구 분	계 산 식
정기검사 수수료	기본검사 수수료 + 시설검사 수수료 + 분석 수수료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본검사 수수료, 시설검사 수수료 및 분석 수수료의 산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수수료 납부 등) ① 정기검사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에 현금으로 검사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검사기관에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기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설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를 합격하지 못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재검사에 대해 비용을 면제한다. 다만, 분석 수수료 등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기검사 수수료의 항목별 산출방법(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계 산 식
기본검사 수수료		- 기준 노임단가 × 기본검사 산정계수
시설검사 수수료	수탁처리업	- 제경비 + 기술료 · 제경비 : 시설검사 인건비 × 0.6 · 기술료 : (시설검사 인건비 + 제경비) × 0.1
	재이용업	- 제경비 + 기술료 · 제경비 : 시설검사 인건비 × 0.3 · 기술료 : (시설검사 인건비 + 제경비) × 0.1
분석 수수료		- 분석기관에서 정하는 분석 수수료 기준 적용

비고 1. 기준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환경부문 고급기술자 노임단가의 30%와 환경부문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각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시설검사 수수료의 시설검사 인건비는 기준 노임단가에 시설검사 산정계수와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시설규모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3. 기본검사 및 시설검사의 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검사 산정계수 : 1.5

2) 시설검사 산정계수

- 아래 표에서 당해 사업장 시설에 해당하는 항목 계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의 계수를 적용한다

구분	저장 시설	처리시설				
		증발농축 시설	건조시설	소각시설	물리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계수	0.5	1.0	1.0	2.0	1.0	1.0

3) 시설규모 계수

구분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처리능력 (톤/일)	200미만	200이상~400미만	400이상	50미만	50이상~100미만	100이상
계수		1.0	2.0	3.0	1.0	2.0	3.0

4. 하나의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업과 재이용업을 병행하는 경우 수탁처리업의 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으로 산정한다.

5. 산정된 정기검사 수수료의 천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